

『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』 의 건 서(안)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관 련 법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

나.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 1호 및 제12호

3. 의견내용

구미시 진평동 25-1 로즈마리 501번지 최인혁 외 1,159명으로부터 접수된 『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』에 대한 청원의 건은,

『YES ROCK페스티벌』의 정상 개최는 물론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구미 밴드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,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,

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,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에 의거 구미시장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다.

다 음

- YES ROCK 페스티벌의 정상적인 개최와 함께 밴드 문화 발전과 구미예술의 발전을 위해, 지역 밴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문화 도시 구미로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구미시의 창조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.

2013. 6.

구미시의회 의원 일동